##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091 제출연월일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주거지원) ① 국가와 지방	제10조(주거지원) ①
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	
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	
지원을 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	5 <u>대통령령 또는 해당</u>
는 주거지원	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